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경영, 김경우,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
박순규, 이영실, 이정인,
장인홍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음.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가 요구됨.
- 이에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21.4.1)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함. (안 제3조제1항)
- 나.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을 추가함. (안 제7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험으로부터”를 “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”로
한다.

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2호까
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<u>위험으로부터</u>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<u>1.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</u></p> <p>2. ~ 12. (현행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1052400000008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05.24

회신일 : 2021.05.25

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(책무)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 노출자를 ‘조기발견’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, 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정책조사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채소영

☎ 02-2180-7942
e-mail : liz1998@seoul.go.kr